

금융위원회

의결 제2021-321호

1. 조치대상자의 인적사항

제재대상	내용
기 관	(주)우리카드

2. 조치내용

- 과태료 5억원 부과 조치

3. 조치이유

가. 지적사항

- 「여신전문금융업법」 제16조의5 등에 의하면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회원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한 날부터 일할 계산하여 산정된 연회비 반환금액을 10영업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하는데도
 - (주)우리카드는 2013.9.23.~2019.10.31. 기간 중 신용카드 계약을 해지한 일부 회원에 대하여 계약을 해지한 날부터 일할 계산하여 산정된 연회비 반환금액(17,531건, 232백만원)을 10영업일 이내에 반환하지 않았음

나. 근거법규

- 「여신전문금융업법」 제16조의5
- 「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」 제6조의11